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554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생애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도입	2
가. 개정안의 내용	2
나. 검토의견	4
다. 관계 기관 의견	7

I. 개요

1.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55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남인순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9. 3.
- (3) 회 부 일 : 2024. 9.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있고, 국민연금 고갈론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 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 기간 증가, 안정적인 일자리 감소, 고용불안정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면서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율이 낮 으며, 이로 인해 청년들이 국민연금제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실 정임.

이에 청년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연금에 가입 하지 않고 있는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공적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청년층의 최초 국민연금 기여금을 국가가 일정기 간 동안 납부하여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만들어 주고, 그 기간 동안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것임.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생애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도입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공적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이 20세 또는 30세가 된 경우 국가가 3개월간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 100조의5 신설).

현 행	남인순의원안
<신 설>	제100조의5(청년에 대한 생애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가입대상인 사람으로서 20세 또는 30세(이하 이 조에서 “해당연령”이라 한다)가 된 사람이 그 해당연령이 된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해당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3개월 간 지역가입자로서 해당 월의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기간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때에는 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을 것 2. 해당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을 것 3. 제9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을 것 4. 30세가 된 사람의 경우 종전에 이 조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현 행	남인순의원안
제100조의5(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생략)	② 국가는 해당연령이 된 사람에 대하여 그가 제1항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지원 기간 동안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6(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현행 제100조의5와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에 대한 생애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대상인 사람으로서 20세 또는 30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2024년 현재 42%(매년 0.5%p씩 인하하여 2028년부터 40% 적용 예정)인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은 가입 기간이 '40년'인 평균 소득 가입자에 적용되는 수치인데,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고,¹⁾ 비임금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2070년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27.6년²⁾으로 전망되어 실질소득대체율은 명목소득대체율의 70%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됨.³⁾

□ 이에 개정안은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는 사람 중 20세 또는 30세(단, 20세 때 개정안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에 도달한 청년에 대하여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2024년 11월 기준 390,000원⁴⁾)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를 3개월간 지원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우선 생성하여주고,

실직·휴직·병역·학업 등의 이유로 연금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에 대하여는 추후 납부제도⁵⁾를 활용하여 가입 기간을 보충할 여지를

1) 한국고용정보원('21)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가 학업을 모두 마친 후 첫 일자리에 입직하기까지 대졸 이상의 경우 평균 11개월, 전문대졸의 경우 평균 13개월, 고졸이하의 경우 평균 35개월이 각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2) 보건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2023. 10.

3) 가입자별 소득대체율은 그의 가입 기간에 비례하여 연동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4)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한액과 상한액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6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390천원

나. 상한액: 6,170천원

2. 적용기간: 2024년도 7월분부터 2025년도 6월분까지

5) 「국민연금법」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마련하여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들의 가입 기간을 늘려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인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국민연금법」 제9조제3호6)에 따라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더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한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개정안에 따라 20세가 되는 때에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생성된 자가 같은 법 제9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7)에서 정하는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게 되므로 이를 미납하였을 때 독촉 및 체납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고,8)

2.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이하 생략)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①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6) 「국민연금법」 제9조(지역가입자)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7) 「국민연금법」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2.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5.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6.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이 경우 행방불명의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국민연금법」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까지 내지 아니하거나 제90조의2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9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납부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9)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 예외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자동 생성됨으로써 불이익 처분의 대상이 되거나 부가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불편이 야기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의 연금보험료 지원액 산정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이 적용되어 연금급여액이 줄어드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는 점에 대하여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예를 들어, 27세에 처음 취업한 사업장가입자 甲(보수월액 300만원)이 12개월간 근무한 후 불의의 사고로 장애2급이 발생한 경우, 현행법에 따른 甲의 ‘가입 기간 중 평균소득’은 300만원이지만, 甲이 개정안에 따라 20세 때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았다면 ‘가입 기간 중 평균소득’은 247만 8천원¹⁰⁾으로 낮아져 장애연금 수급액이 감소하게 됨.

9)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1조(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 등) ① 사용자나 지역가입자는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1조(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 등) ① 법 제91조제1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을 하려는 사용자나 지역가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에 진단서나 휴직 발령서 사본 등 납부 예외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병역의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계산식: $[300\text{만원} \times 12\text{개월} + 39\text{만원(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 \times 3\text{개월(지원 기간)}] \div 15\text{개월} = 247\text{만 } 8\text{천원}$.

-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약 428억원으로 전망하였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

(단위: 억원, 명, 원/월)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369	406	453	448	467	2,143	428.6
대상자	323,005	335,724	354,680	330,831	326,405	-	-
지원단가	38,115	40,275	42,615	45,090	47,655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개정안은 청년이 국민연금에 조기 가입하게 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20~30대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지만, 소득활동을 하여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개정안에 따라 3개월간 보험료를 지원받은 후 납부여력이 없을 때 다시 납부 예외자가 될 수 있어 가입기간 확보와 관련한 실익이 낮은 측면 등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10